

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(2015.3.9.)

규칙안 심사보고서

운영위원회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2. 23.
- 나. 제출자: 이성복 의원 외 10명
- 다. 회부일자: 2015. 2. 24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5. 3. 5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5분 자유발언 단서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1항)
 - 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함
- 나. 5분 자유발언 신청시일 조정(안 제33조의2제2항)
 -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→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
- 다.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3항)
 -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번에 개정하려는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
 -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고
 - 5분 자유발언의 신청시일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조정하고,
 -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있어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
- 그 밖에 일반적인 규칙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